

IV. 기타

【소득세 및 법인세】

(1)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(소득법 §17)

현 행	개 정 안
☐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(배당가산액)을 가산 - 배당가산액 = 배당소득 × 10%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(배당세액공제)	☐ 배당가산율 조정 ○ (좌 동) - 배당가산액 = 배당소득 × 11%* *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(10%)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($\frac{10\%}{1-10\%} \approx 11\%$) ○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

〈적용시기〉 '27.1.1.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